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8 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 박해철·김태선·송옥주

강선우 • 박홍배 • 한준호

임미애 • 이정문 • 진성준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최저임금법」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,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 업과 '가사(家事)사용인'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.

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「최저임금법」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실제,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이상으로 추산되고,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,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

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"사업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"을 "사업에는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근	제3조(적용 범위) ①		
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			
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			
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			
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<u>사업과</u>			
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 적용	<u>사업에는</u>		
하지 아니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